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1977.05.01

개정일: 2019.02.13

담당부서: 연구처 - 연구전략팀(02-2123-515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연구기구가 학문의 효율적 연구를 수행하고, 소속 연구원의 교내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 관리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31>

제2조 (구분)

① 연구기구는 지속성국가과제 연구기구, 대학교부설 연구기구,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대학간 연구기구, 대학(원)부설 연구기구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13., 2010. 2. 9>

1. 지속성국가과제 연구기구는 중장기 초대형 국가연구과제 수주 시 사업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기관으로 그 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센터' 또는 '연구단'으로 한다. <신설 2019. 2. 13.>

2. 대학교부설 연구기구는 학교전체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맞게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기관으로 그 명칭은 '연구원'으로 한다. <항번호 개정 2019. 2. 13.>

3.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는 대형국책과제 또는 민간 기관 지원의 집단연구과제 수주 시 사업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기관으로 그 명칭은 '연구센터' 또는 '연구단'을 원칙으로 한다.<항번호 개정 2019. 2. 13., 개정 2018.01.25.>

4. 대학간 연구기구는 소속 연구원의 구성 및 추구하는 학문적 목표가 단과대학이나 특정 학문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융합된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명칭은 '연구소'로 한다. 다만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항번호 개정 2019. 2. 13., 개정 2012.02.28>

5. 대학(원)부설 연구기구는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문분야에 소속된 기관으로 그 명칭은 '연구소'로 한다. 다만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개정 2019. 2. 13., 개정 2012.02.28>

② 연구원은 학문 연구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하 연구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08.31>

③ 연구원(소)은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은 실, 처, 원 등 본교 직제명규제2조 제1항 각 호의 부설연구기구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전문 개정 2009. 6. 1.]

제3조 (설치)

- ① 연구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 발의와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대학(원) 부설 연구기구는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08.31, 2010. 2. 9, 2009. 6. 1.>
- ② 연구처장은 연구기구의 설립 신청에 대해 평가위원 및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해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단, 대학교 부설급 연구기구는 설립신청 후 별도의 서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08.31, 2010. 2. 9, 2009. 6. 1.>
- ③ 지속성국가과제 연구기구는 연구과제 지원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귀속 연구비가 연간 50억원 이상이고 과제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 2. 13.>
- ④ 대학교 부설급 연구기구는 연구과제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관의 요구가 해당 사업요강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사전에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단, 민간 기관 지원 연구과제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집단 연구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항번호 개정 2019. 2. 13., 개정 2018.01.25., 본항 신설 2012.08.31>
- ⑤ 지속성국가과제 연구기구,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기구는 설립 시 직제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2. 13., 2017.08.01.>

제4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상임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 본인의 신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구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08.31, 2010. 2. 9>

2. 객원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중,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을 쌓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구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8.01., 2012.08.31, 2010. 2. 9>

3.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구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8.01., 2012.08.31, 2010. 2. 9>

4. 연구원

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적합한 본 대학교 박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구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8.01., 2012.08.31, 2010. 2. 9, 2008. 5. 22.>

5.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본 대학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구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8.01., 2012.08.31, 2010. 2. 9, 2008. 5. 22.>

② 본 대학교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구 중 3곳을 초과해 소속할 수 없다. 다만 대학교 부설급 연구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8.31, 2010. 2. 9, 2009. 6.

1.>

③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8.31>

④ 연구기구의 장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임명한 후 지체 없이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8.31, 2010. 2. 9>

⑤ <삭제 2017.08.01, 개정 2012.08.31, 2010. 2. 9>

⑥ 연구원의 임용은 매학기 초에 하고, 연구기구의 장은 1년 단위로 연구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시에는 연구처 연구전략팀, 총무처 인사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각 연구기구는 연구원 신규 임용 시 임용 대상자의 학력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 받아 연구기구의 장의 책임하에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1., 2010. 2. 9, 2012.08.31, 2015.8.6.>

1. <삭제 2017.08.01.>

2. <삭제 2017.08.01.>

3.<삭제 2017.08.01.>

4. <삭제 2017.08.01.>

5. <삭제 2017.08.01.>

제4조의 2 (연구원(員)의 제증명)

① 연구원(員)의 제증명은 해당 연구기구의 장의 명의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 연구원의 경우, 총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처장의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2.08.31>

③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처에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연구처장의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2.08.31>

④ 총장 명의의 증명서 발급은 총무처를 통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연구원에 한한다.<개정 2012.08.31>

⑤ 상기 제 증명 발급 관련 업무는 각각 연구처, 의료원 의과학 연구처, 원주 연구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2.08.31>

[본조 신설 2010. 2. 9]

제5조 (임원)

① 각 연구기구에는 원장(소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원장(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2. 9.>

② 지속성국가과제 연구기구, 대학교 부설 연구기구, 대학교 부설급 연구기구, 대학 간 연구기구의 원(소)장 및 부원(소)장은 총장이 임면하고, 대학(원)부설 연구기구의 원(소)장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대학(원)부설 연구기구의 부(원)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 2. 13., 2012.08.31, 2010. 2. 9, 2008. 5. 22, 2008. 10. 30.>

③ 연구기구의 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2. 9.>

④ 연구기구에는 업무 및 회계의 검사를 위해 감사를 두되,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08.31, 2010. 2. 9.>

⑤ 연구원 산하 연구소의 장은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08.31, 신설 2009. 6. 1.>

- ⑥ 연구원 하부 조직의 장은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9., 2012.08.31, 2009. 6. 1.>
- ⑦ 연구소 하부 조직의 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한다.<개정 2016.1.29., 2012.08.31, 2009. 6. 1.>
- ⑧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6. 1, 신설 2008. 5. 22.>

제6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기구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2. 9>
- ② 운영위원은 원(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본부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총장급 이상의 보직교원이 원장으로 임명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구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본부행정기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09.18.,2012.08.31>
- ③ 위원장은 연구기구의 장이 맡는다. <개정 2012.08.31, 2010. 2. 9>
-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는 각 연구기구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0. 2. 9>

제6조의 2 (권한의 위임 등)

- ① 총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2.08.31>
 - ② 규정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 및 제6항, 제6조 제2항의 총장의 임면, 위촉, 승인 사항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촌 캠퍼스는 연구본부장이, 의료원은 의무부총장이, 원주캠퍼스는 원주부총장이 각각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7.08.01.,2012.08.31, 2010. 2. 9, 2009. 6. 1.>
 - ③ 제1항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과 관련된 업무는 각각 연구처, 의료원 의과학연구처, 원주 연구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08.31, 신설 2010. 2. 9>
- [본조신설 2009. 6. 1.] [종전 제9조의2를 본조로 이동]

제7조 (연구기구심의위원회)

- ① 연구기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0. 2. 9>
 1. 연구기구의 신설과 폐지 <개정 2012.08.31>
 2. 연구기구의 분리와 통합 <개정 2012.08.31>
 3. 연구기구의 평가 및 감사 <개정 2012.08.31>
 4. 연구기구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5. 연구기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31>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이 위원회는 연구본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본부장이 맡으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간사), 의과학 연구처장, 원주 연구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08.31, 2008. 10. 30., 2018.3.14.>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 2010. 2. 9>

④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기구의 신설과 폐지, 분리와 통합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8.31, 신설 2010. 2. 9>

제8조 (보고)

① 연구기구의 장은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부설 연구기구는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12.08.31, 2010. 2. 9>

1. 연구기구 운영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 다음해 3월말까지 <개정 2010. 2. 9>

2. 회계년도의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개정 2008. 5. 22.>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개정 2008. 5. 22.>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재정)

① 각 연구기구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2. 9>

② 각 연구기구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0. 2. 9>

③ <삭제 2012.08.31>

④ <삭제 2012.08.31>

⑤ 제2항의 운영비 중 간접 연구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운영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간접연구경비의 예·결산 및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6.8.18., 본항 신설 2012.08.31>

제9조의 2 (권한의 위임 등) [종전 제9조의2는 제6조의2로 이동 <2010. 2. 9>]

제10조 (연구기구 평가 및 감사) 연구기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기구의 예결산, 재정, 사업 등에 대해 수시로 평가 및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08.01, 신설 2010. 2. 9]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1조 (폐원(소) 및 직제 유지 등<제목개정 2017.08.01.>)

① 직제 기간이 종료되는 연구기구는 연구기구심의위원회에 직제 유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기구심의위원회는 이를 접수 및 평가하여 직제 유지 여부 및 기간(3년 이내)을 결정한다. <개정 2017.08.01., 2012.08.31>

② 연구기구심의위원회는 평가 및 감사 결과 연구기구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연구기구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통폐합 내지 폐원(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8.31>

③ 통폐합이나 폐원(소) 조치된 연구기구는 연구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구의 자산을 즉시 학교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원(소)일로부터 1년간 유사한 연구기구 설립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2.08.31>

④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는 국책사업종료 후 자동으로 폐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 2. 9]

제12조 (경과조치) [부칙(14)로 이동 2016.8.18.]

부칙

(1) <삭제 2012.08.31>

(2) 이 규정은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제7조 제2항, 제3항)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제9조 제3항, 제4항)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4항, 제6조 제2,3항, 제8조, 제9조 제1,2항, 제3항 삭제, 제4,5항을 제3,4항으로 변경, 부칙 제1항 삭제, 부칙 제2항-제9항을 제1항-제8항으로 변경)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8조, 제9조 제4항 삭제)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8조)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2항 개정, 제5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동조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항번호 변경, 제5조 제5항 및 제9조의2 신설)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14)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내지 제12조)은 2010.3.1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의 폐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010.2.9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기존 연구기구는 본 규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학부총장에게 연구기구 규정을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정·첨부하여 재등록 신청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신설), 제4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5조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

2항 및 제4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및 제4항(삭제), 제5항(신설),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신설), 제4항, 제5항(신설),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1) 삭제)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6항)은 2015년 8년 7월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항, 제5조 제6항, 제7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 제2항, 제5항, 제12조 이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①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5항, 제6항, 제6조의 2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규정 제3조 제4항과 관련해서는 그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의 직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연구기구 설립 허가시 존속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해당 존속기간을 직제기간으로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의료원 연구기구에 한하여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의 적용을 2020년 3월 1일까지 유예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2항)은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4) (시행일)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및 제5항, 제5조 제2항)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